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에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미거주(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02.03.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1. 제 목: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재 발송) 통보
2. 위반내용: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위반
3. 근거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규정
4. 공시송달 대상자: “불임내역 참조”
5. 공고기간: 2020.02.03.(월) ~ 2020.02.17.(월) (15일간)
6. 공고장소: 인천광역시 자치구 지방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과태료부과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
8. 과태료부과 예정금액 등: 4만원(단 승합차 및 4톤 이상 화물차 등은 5만원)
※ 단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 없이 자진납부 하는 경우 20% 감경됨.
9. 상기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경제교통과(교통지도팀)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32)930-3639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경제교통과(☎032)930-33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과태료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현황 1부. 끝.